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2205
------------	------

2025. 6. 16.
주택공간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10. 16. 왕정순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4. 10. 18.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7회 정례회 제5차 주택공간위원회 (2024. 12. 17. 상정·보류)
 - 제331회 정례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2025. 6. 16. 상정·의결)

II. 제안설명 요지 (왕정순 의원)

1. 제안이유

- 현재 급속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 서울특별시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함
-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의 편향성, 윤리적 문제 등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시민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
- 글로벌 인공지능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특별시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산업으로서 인공지능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와 품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국회에서 인공지능 기본법률 제정을 논의 중이나 서울특별시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국회의 인공지능 기본법률 제정을 촉진시키고 서울시 조례 운영 경험을 통해 현실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입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과 기본원칙(안 제1조~제2조)

나. 용어의 정의(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안 제4조)

라.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안 제9조~제10조)

사. 지원사업(안 제16조)

Ⅲ. 검토보고 요지 (윤은정 수석전문위원)

- 이 제정조례안은 급속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가. 조례 제정의 배경

- 최근 인공지능(AI¹⁾)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라 향후 인공지능이 가져올 잠재적 혜택과 함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
-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서, 의료·복지·교육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부터 과학적 난제 해결과 같은 전문영역에 이르기까지 그 활용영역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국내외 경제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반면, 인공지능 기술은 모분포를 알 수 없는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계학습에 기반하고 있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며²⁾, 인공지능에 의한 인간의 기본권 침해, 개인정보 및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우려³⁾도 제기되고 있음.
- 정부는 2019년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수립(2019.12.17.)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토대로 한 경제·사회 전반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고, 국회에서는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⁴⁾을 필두로 인공지능에 관련된 법률안들이 발의되고 있음(검토보고서 불임2).
- 그러나, 인공지능에 대한 ‘산업 진흥’과 ‘규제 수준 및 안정성 확보’ 사이

1)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컴퓨터 과학의 세부분야 중 하나임. (위키백과사전_인공지능 정의)

2) “최신 AI 불확실성 정량화 동향 및 시사점” - AI Network Lab 인사이트 2022-14호_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12.)

3) “인공지능 윤리와 저작권의 규제체계 연구” - NARS 정책연구용역보고서_국회입법조사처(2024.9.28.)

4) 의안번호 2022593호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_이상민의원 대표발의(2019.9.23.)

에 상반되는 주장이 제기⁵⁾되어 왔고, 고성능 인공지능의 위험이 과장되어 있다거나 법의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법률 제정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⁶⁾.

-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조정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인공지능 기본법안**’, 검토보고서 붙임2)을 의결(‘24.11.26.)함에 따라 관련 법률안 제정이 보다 가시화되고 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임.

○ 따라서, 제정조례안은 인공지능에 대한 정책 등을 서울특별시가 선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하는 것임.

- 서울시는 2024년 4월 “AI 행정 원년”을 선포⁷⁾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 혁신을 이루고자 ‘AI CCTV 기반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구축’, ‘지능형 교통시스템 운영’, ‘스마트 안부확인 서비스 운영’ 등 45개의 사업에 대해 3년(‘24~‘26)간 2,064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검토보고서 붙임3).

- 참고로, 경기도는 지난 7월 인공지능 관련 부서(AI국)를 신설하고, 조례를 제정(「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등)⁸⁾하는 등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음.

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p.12~16, 2024.7.

6) “진흥이나 규제냐...AI 기본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 경향신문, 2024.09.24.

7) “서울 인공지능(AI) 행정 원년 -서울시 인공지능(AI) 행정 추진계획” 2024.3.26. 시장방침 제22호 (정보시스템담당 관-5947

8)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2024.7.18. 제정),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2023.10.11. 제정),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2024.10.11. 제정),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2024.10.11. 제정)

나. 조례안의 주요내용

- 이 제정조례안은 총 17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주요 내용으로
는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수립·시행,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업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음.

< 제정조례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

구 분	조 항	내 용
안 제1조 ~ 안 제3조	목적, 기본원칙, 정의 등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 · 안정적인 인공지능 이용환경 조성
안 제4조 ~ 안 제7조	시장의 책무	·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 마련 · 행·재정적·기술적 지원
	기본계획·시행계획	· 인공지능 정책의 방향 및 추진목표, 분야별 시책 · 재원 조달, 신뢰 기반조성, 윤리원칙 확산 ·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동향 조사 및 평가
	가이드라인	· 윤리적 개발 및 이용 가이드라인 수립·시행
안 제8조 ~ 안 제15조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역할)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 고위험영역 규율 등 · (구성) 15인 이내 : 공무원, 시의원, 외부전문가 등 · (운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안 제16조 ~ 안 제17조	사업 지원, 협력체계 구축	·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 교육, 창업 등

(1) 용어의 정의(안 제3조)

- 안 제3조는 ‘인공지능’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현재 이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국회에서 논의중인 ‘인공지능 기본법안’⁹⁾에서 동일

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

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바, 그 용어와 설명의 정합성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인공지능 정의 관련 비교표 〉

제정조례안	‘인공지능 기본법안’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 기술 또는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가. ~ 차.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작동하도록 설계된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시스템, 그 밖의 장치를 말한다. 3. “고위험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2) 기본계획(안 제6조)

- **안 제6조**는 시장에게 인공지능 기본계획(5년)과 시행계획(매년)을 수립·시행토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인공지능 윤리 원칙의 확산 방안,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동향 조사 및 평가 등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에서는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인공지능이 큰 틀에서 ‘지능정보기술’¹⁰⁾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을 “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줌으로써, 효율적 행정을 기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제정안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정안과 같음)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인공지능 정책의 분야별 시책	
3.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4.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방안	
5.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확산 방안	

10)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능정보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분석·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마. 무선 또는 유·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6.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동향 조사 및 평가 7. 그 밖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정안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

- 또한, 수립주기와 관련하여서는 ‘인공지능 기본법안’ 상 정부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를 예측하기 어렵고, 잠재적 영향력과 광범위한 파급력을 고려할 때,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당기는 방안(5년→3년)도 검토해 볼 수 있음.

(3) 가이드라인 수립(안 제7조)

- **안 제7조**는 시장에게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 및 이용 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토록 한 것으로, 최근 인공지능에 의한 인간의 기본권 침해, 개인 정보 및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 환경이 조성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인공지능이 국가적으로 중요해지고,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가이드라인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일관된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¹¹⁾.

11) 현재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 및 이용에 대해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은 부재하며,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라인(방송통신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12.)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재 논의중인 ‘인공지능 기본법안’에서는 정부가 인공지능 윤리원칙(가이드라인 역할)을 제정·공표 수립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와 연계성 및 정합성을 맞춰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¹²⁾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제정과 정부 차원의 원칙, 표준 가이드라인안 등이 선행된 이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바¹³⁾,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가이드라인)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 및 이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u>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제7조(가이드라인) ----- ----- ----- ----- <u>수립·시행할 수 있다.</u>

(4) 인공지능위원회(안 제8조~안 제15조)

- 안 제8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인공지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사항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2024. 2.) 등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만 가이드라인이 존재함.

1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제27조(인공지능 윤리원칙 등) ① 정부는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공표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의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 정신적 건강 등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제품·서비스 등을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에 관한 사항

3. 사람의 삶과 번영에의 공헌을 위한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윤리원칙이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에 의해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 및 홍보·교육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윤리기준(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법령, 기준,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말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윤리원칙 및 제2항에 따른 실천방안과의 연계성·정합성 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할 수 있다.

13)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도시국은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직접 수립하기보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간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을 통해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싶다는 입장이나, 이는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있을 뿐 이용에 대한 내용은 부재하여 현재 상황에서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이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을 규정함¹⁴⁾.

- 인공지능위원회의 경우, 이제 신설되는 사안인 만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 따른 ‘스마트도시위원회’의 분과 위원회로 우선 운영한 후 안정화 시기에 독립된 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문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이용 및 개발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이용 및 개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규율, 관련된 사회적 변화 양상과 정책적 대응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신 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1. ~ 7. (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에 인공지능 분과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14)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준수하였음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한편,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를 설치할 때, 명백한 사유(법정 상시 위원회 등)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명시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¹⁵⁾ 이를 신설해야 하며, 그 기한은 현행 스마트도시위원회의 존속기한¹⁶⁾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유연한 운영이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16조 · 제17조 (생 략)	제16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 · 제18조 (제정안 제16조 및 제17조 와 같음)

(5) 지원사업(안 제16조)

- **안 제16조**는 인공지능기술의 국·내외 동향 등 조사,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창업·기업지원 등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각 자치구와 법인 또는 단체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5)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16)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9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정 안

제1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동향 및 제도의 조사
2.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 시험 및 평가
3.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4. 인공지능기술 관련 창업 및 기업 지원
5.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 개선 및 스마트도시 구현
6.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자치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인공지능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는 인공지능기술의 동향 보고서¹⁷⁾를 발간(서울디지털재단)하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 실증 지원(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검토보고서 붙임⁵⁾)과 “서울 AI 허브” 운영¹⁸⁾(경제정책실 첨단산업과)을 통한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 중이나, 별도의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를 연계 또는 일원화하여 인공지능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음.

다. 종합의견

- 이 제정조례안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특별시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 등의 효과와 인공지능 정책을 선도한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현재 관련 법 제정이 가시화되는 상황으로 추후 법령과의 정합성

17) SDF AI 동향 보고서_서울디지털재단_2024.9월호

18) “2024년 서울 AI 허브 운영계획”_2024.3. 첨단산업과-2645

및 위임사항 반영¹⁹⁾ 등 법령 시행에 맞춰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 따라, 조례 제정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겠음.

- 한편, 서울시는 현재 인공지능에 관한 정책 수립(디지털도시국)과 사업 지원(경제정책실)의 추진부서가 상이하여 장기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여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2025.1.21., 제정, 2026.1.22., 시행)에 따라 법적 정의와 통일함(안 제3조, 제8조 제2항제6호)
- 인공지능은 큰 틀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에 포함되므로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인공지능위원회를 각각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과 스마트도시위원회와 연계함(안 제6조, 안 제8조)

VI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9)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공지능 기본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에게 인공지능 기술 도입과 활용에 대한 지원과, 집적단지 지정, 기술의 실증기반 조성, 민간 사업 투자에 필요한 조치 등을 위임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205
----------	------------

제안일자 : 2026. 6. 16.

제안자 : 주택공간위원장

1. 수정이유

- 관계 법령과의 정의를 통일하여 규정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유사 분야의 기본계획 및 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함.

2. 수정의 주요내용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2025.1.21., 제정, 2026.1.22., 시행)에 따라 법적 정의와 통일함(안 제3조, 제8조 제2항제6호)
- 인공지능은 큰 틀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에 포함되므로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인공지능위원회를 각각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과 스마트도시위원회와 연계함(안 제6조, 안 제8조)
- 인공지능의 발전속도를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3년으로 수정함(안 제6조)
-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설정함(안 제8조제4항)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호 중 “하드웨어 기술 또는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소프트웨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고위험영역”을 “고영향”으로,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다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의 수립 주기를 따를 수 있다.

안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각각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안 제7조 중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8조제2항제6호 중 “고위험영역”을 “고영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7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위원회에 인공지능 분과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해당 분과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개정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1. (생략)	1. (제정안과 같음)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u>하드웨어 기술 또는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u> 을 말한다.	2. ----- ----- <u>하드웨어·소프트웨어</u> ----- -----.
3. “ <u>고위험영역</u>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u>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u> 을 말한다.	3. - <u>고영향</u> ----- ----- <u>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u> ----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u>5년</u>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6조(기본계획) ① ----- ----- <u>3년</u> ----- -. 다만,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다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의 수립 주기를 따를 수 있다.
②·③ (생략) <신설>	②·③ (제정안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각각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가이드라인)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환경	제7조(가이드라인) ----- -----

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 및 이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5. (생략)

6.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규율, 관련된 사회적 변화 양상과 정책적 대응에 관한 사항

7. (생략)

<신설>

<신설>

-----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

1. ~ 5. (제정안과 같음)

6. 고영향 -----

7. (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7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위원회에 인공지능 분과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인간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
2. 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을 조성하도록 추진될 것
3.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이루어질 것
4. 사회·경제·문화와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시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될 것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소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다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의 수립 주기를 따를 수 있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인공지능 정책의 분야별 시책
3.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방안
4.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방안
5.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확산 방안

6.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동향 조사 및 평가

7. 그 밖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각각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가이드라인)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 및 이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이용 및 개발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이용 및 개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 관련된 사회적 변화 양상과 정책적 대응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7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위원회에 인공지능 분과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공지능 정책 관련 서울특별시 공무원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공지능 정책을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

제1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동향 및 제도의 조사
2.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 시험 및 평가
3.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4. 인공지능기술 관련 창업 및 기업 지원
5.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 개선 및 스마트도시 구현
6.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자치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